



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

수신자 전 회원사

(참 조)

제 목 **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**

1.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-1565 (2020.10.14.)와 관련입니다.

2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(`20.8.12)에 따라 행정명령권자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령할 수 있으며,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2020.10.13.부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.

3. 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청(중앙방역대책본부)에서 배포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공통 기준 및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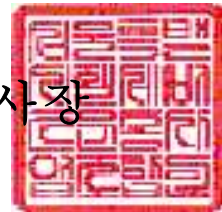
- 과태료 부과대상 :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 위반 (전세버스 이용자 포함)
- 적용기간 : 감염병 위기 “경계”이상에서 행정명령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
 - ※ 2020.10.13.시행 (계도기간 1개월)
 - ※ 과태료 10만원 이하 (관리자·운영자의 관리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)
- 법적근거 :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2~4호, 제83조

※ 붙임 : 가. 국토부공문 사본 1부.

나.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 안내서 1부.

※붙임자료는 조합홈페이지(www.tourbus.or.kr)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. [끝]

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



담 당 박영수 부 장 라영석 실 장 박호동 전무이사 박태환

협조자

시행 서전버조 20-262호 (2020.10.15.) 접수 ()
우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 (교통회관 11층) / <http://www.tourbus.or.kr>
전화 02-422-0019 전송 02-418-0071 / / 공개

"안전띠는 생명띠 정지선은 생명선"